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◇ 제 · 개정 이유

- 가스선택밸브의 품질 향상을 위한 우수품질인증기준 및 형식승인 기준을 통합·강화함으로써 기술기준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- 가. 수동개방장치의 작동조작력시험(안 제4조제10호)
- 나. 모터식 작동장치 작동시간(안 제9조제4호)
- 다.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(안 제9조의2)